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국장
람	

제1399호 2018. 10. 23(화)

차 례

## 공 고

○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----- 1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-1505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
2018. 10. 2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제정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자율방범대 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

### 2. 주요내용

- 자율방범대의 정의와 지원대상 명시
-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지원 내용
- 타 법령 준용 근거 마련

### 3. 의견제출

-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2018. 11. 12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 (우)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/ ☎ 032-560-4514,  
FAX 032-560-2710 ]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○ 기타 참고사항

4. 참고사항

○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

### 1. 의결주문

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.

### 2. 제정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자율방범대 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

### 3. 주요내용

- 자율방범대의 정의와 지원대상 명시
-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지원 내용
- 타 법령 준용 근거 마련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제 정 안 : “별지 참조”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해당 없음”
- 다. 예산수반사항 : “해당 없음”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 참조)
- 라. 관계 법령 발취 : “별지 참조”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율방범대” (이하 “방범대”라 한다)란 각 동에서 봉사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.
2. “자율방범대원” (이하 “방범대원”이라 한다)이란 방범대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)** 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(치안센터) 소속으로 기 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으로 1년 이상 방범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방범대로 한다.

**제4조(경비지원 등)**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방범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손전등, 모자, 완장, 호루라기, 곤봉,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
2. 방범대 활동에 대한 야식비
3. 방범대 순찰 차량 유류비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방범대의 전년도 연중 활동실적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

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방법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3.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않는 경우
4. 그 밖에 방법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법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**제5조(지도 및 감독)**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, 방법대는 구의 지도·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.

**제6조(교육)**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법대원에게 자율방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7조(포상)** 구청장은 방법활동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법대 및 모범대원에게 「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

**제8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며 구청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방법대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□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(2017. 7. 26. 시행)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1.7.]

**제7조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**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
2. 지역사회 개발·발전에 관한 활동
3.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
4.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에 관한 활동
5.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
6.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
7.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
8.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
9.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
10. 문화·관광·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
11.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
12.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
13.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
14.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
15.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

[전문개정 2014.1.7.]

### □ 「지방재정법」 (2018. 6. 28.시행)

**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<2013. 7. 16.>

(별지 제2호서식)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### 1. 비용발생요인

“해당없음”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(「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)

### 3. 미첨부 사유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

작성자 : 총무국 총무과장 안 기 운